

의안번호	제 6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 천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2. 2

# 사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'99. 2. 2

제 출 자 : 사천시장

## 1. 제안이유
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 에 따라 용어를 상위 법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

## 2. 주요골자

“정화시설”을 “처리시설”로 함(안 제12조제1항제2호)

## 3. 법적근거 :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

## 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**사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**

사천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중 “정화”를 “처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 (수수료의 부과징수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정화조오니            단독정화조, 합병정화조, 오수정화시설,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오니 청소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(오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시장이 분뇨등관련 영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2조 (수수료의 부과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정화조오니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처리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